

[] 양육수당
[] 의료비
[] 그 밖의 양육보조금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*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입양 아동	성명	생년월일
	입양일	입양 당시 장애 유무(유[], 무[]) 질병 유무(유[], 무[])

양육 수당	신청금액	원(월 원)	지급 신청기간
			. . . ~ . . . (개월)

의료비	신청금액		의료보장 구분 (코드번호)	
	진료기간			
	진료기관		진료내용	
	총진료비	보험급여: 원	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	원
비급여: 원				

그 밖의 양육보조금	신청금액	원	신청내역

입금 계좌	은행명	예금주	계좌번호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,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수수료
		없음

첨부서류	1. 공통 가. 신청인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 나.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입양아동에게 장애 등이 있는 경우(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) -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입양아동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3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- 입양아동의 진료·상담·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4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- 해당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-----	---

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	입양아동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